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12. 19(목) 총 4매 (본문2, 붙임2)	
담당 부서	건설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김민태 • ☎ (044) 201-4597, 4962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,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

-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평가하는 「건설근로자 고용평가」 내년 시행
-정규직 비율가족친화 등 토대로 등급 산정·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 반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‘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’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-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,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,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-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, 신규 정규직 비율,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하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·전문업별로 1~3등급을 부여한다.
 - 그 밖에도, 가족친화인증기업,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,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,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%를 가산하게 된다.
 -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하여 각 협회*에

제출하면 된다.

*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

□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, 1~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*된다.

* 1~3등급 사업자는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~3% 가산

○ 다만,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한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“시공능력평가,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,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”면서,

○ “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”한다고 덧붙였다.

○ 또한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「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」(19.11)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45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건설근로자와 함께합니다.
함께하는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입니다.

2020년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새롭게 시행합니다.



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,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•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32조의2, [별표6]

- **신청대상**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
- **신청기간** 매년 4월 1일 ~ 4월 15일
- **서류접수처** 건설업 등록업종 관련협회
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
※종합/전문 겸업업체의 경우, 전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제출
- **제출서류** ①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*시행규칙(별지 제25호의2서식)
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(전년도, 전전년도)
- **평가방법**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1~3등급 부여
고용평가는 정규직비율, 신규 정규직비율,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
- **평가혜택** 우수업체의 경우, 매년 시공능력평가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~5% 가산 (2021년부터)
- **결과공표** 매년 6월말 (관련협회 홈페이지) *2020년 평가는 8월 말 공표예정

0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

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[별표4]

● **건설근로자 고용평가** = 전년도 고용평가 - 전전년도 고용평가

● **해당년도 고용평가**

$$\left(\frac{\text{정규직수}}{\text{전체건설근로자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신규정규직수}}{\text{정규직수}} \times 0.1 \right) + \left(\frac{\text{청년신규정규직수}}{\text{신규정규직수}} \times 0.1 \right)$$

0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지 우대사항

*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/100 가산

● **가족친화인증기업:**

「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사업자

● **현장 편의시설 설치:**
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

● **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:**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,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

● **선택적복지제도 운영:**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81조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, 같은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

0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 가산비율

* 종합건설업체 전체, 전문건설업체 전체 단위별로 등급 부여

고용평가대상	고용평가등급	등급배분기준	가산비율
종합, 전문 건설업체	1등급	상위 30%미만	5/100
	2등급	상위 30%이상부터 상위 70%미만	4/100
	3등급	상위 70%이상	3/100

CAK 대한건설협회

대한전문건설협회

대한국개설비건설협회

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